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80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학교법인 [redacted]재단
피 고	[redacted]특별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4. 7. 18.
판 결 선 고	2014.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5. 원고에게 한 감면거부처분을 취소한다(2012. 9. 10.은 오기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군 [redacted]읍 [redacted]로 [redacted]에 있는 [redacte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으로, 2012. 9. 3. [redacted]정주방면으로부터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에 있는 [redacte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2. 9. 3.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169,534,880원, 농어촌특별세 12,109,630원, 지방교육세 9,687,700원에 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9. 5.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은 원고의 정관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redacted]대학교는 의과대학이 없으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6. 감사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적용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시 적용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고, 201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만 규정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있고, 취득세 면제혜택을 201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시 적용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수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처분시 적용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과거 처분의 위법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교육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의료관련학과를 설치 운영 중 의료관련학과의 증원을 위해 이 사건 병원을 기증받아 학생들에 대한 교육실습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 수련병원, 국방부로부터 군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교육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점, 원고는 의과대학이 없어 이 사건 병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하고, 의사 및 간호사에게 교직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었을 뿐인 점, 이 사건 병원은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실무수습기관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병원은 교육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정관 제6조는 기본재산으로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구분하고 있는데, 제33조는 이 사건 병원을 수익사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2) 이 사건 병원은 총 72개 병상 규모로, 진료과목은 한방 8개과(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양방 5개과(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 사건 병원은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의료인력은 [redacted]대학교의 교수 및 교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다.

주된 진료내용은 인공관절, 관절내시경, 재활·운동·물리 치료, 중풍·성인병 진료, 소아성장·비만, 알레르기·비염, 여성질환, 피부미용, 각종 검진 등으로 되어 있다.

(3) [redacted]대학교는 2012학년도 및 2013학년도 의료관련학과 내지 의료유사관련학과에 관한 입학정원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2012학년도			2013학년도			증감인원
모집단위명	입학정원	개설전공	모집단위명	입학정원	개설전공	
의료공학	40	의료공학	의료공학	40	의료공학	-
융합과학부	110	의생명과학 의약화학 방재안전과학	융합과학부	40 30 40	의생명과학 의약화학 방재안전학과	- - -
한방산업학부	80	한방식품공학 한방자원개발학	한방산업학부	80	한방식품공학 한방자원개발학	-
간호학	25	간호학	간호학	30	간호학	5
작업치료학	20	작업치료학	작업치료학	30	작업치료학	10
의료정보행정학	45	의료정보행정학	의료정보행정학	30	의료정보행정학	△15
스포츠건강의학	30	스포츠건강의학	스포츠건강의학	30	스포츠건강의학	-
			임상병리학	30	임상병리학과	30

(4) 이 사건 병원은 2007. 12. 2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수련병원으로, 2008. 2. 27.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전공의수련병원으로 각 지정받았고, [redacted]보건대학(학교법인 [redacted]학원)으로부터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위탁받아 실습교육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병원이 [redacted]대학교의 학교수업 목적으로 제공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목적	기간	학과	인원	수업내용
현장수업	2011. 10. 12.	작업치료학과	18	작업치료 인체해부학
현장실습	2011. 12. 19.~2012. 1. 31.	한방산업학부	9	약제감별, 단미 체험, 탕전 및 제환실습
현장실습	2012. 6. 25.~2012. 7. 30.	한방산업학부	1	약제감별, 단미 체험, 탕전 및 제환실습
현장실습	2014. 6. 23.~2014. 8. 23.	생약자원개발학과	2	생약자원현장실습

(5) 원고는 2014. 6. 11. 이 사건 병원에서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유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 10, 13,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의 의미에 관하여

처분시 적용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함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적용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참조). 따라서 수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대상을 판단할 수 없고, 비영리사업자인 원고의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직접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면제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병원이 대학교육에 직접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redacted]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일부 교육실습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은 대학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병원은 서울에 있는 반면, [redacted]대학교는 충북에 있으므로,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 사건 병원이 증여된 2012. 9. 3. 이전에 하루 1회, 보름 2회, 이후에 두달 1회 현장실습이 이루어졌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도 2014. 6. 11. 1회 이루어졌다.

② [redacted]대학교는 일부 의료관련학과를 두고 있으나, 의과대학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병원은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한방산업학부 이외에는 한방과 관련된 학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병원은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진료과목도 일부 한정된 한방과목을 두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의학수업을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 한방의 또는 군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 [redacted]보건대학의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에 대한 실습교육을 제공하였으나, 이것을 [redacted]대학교에 대한 교육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병원은 [redacted]대학교의 교육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병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고, 원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의 정관에 수익사업체로 분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는 교직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병원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방진료를 하여 그 수익을 얻고 있고, 그 수익은 원고의 2012년 법인수익 중 16%를 차지하는 점(갑 제11호증), 중원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실습시간이나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도 전체 병원 운영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병원의 주된 목적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그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김형원

판사 손화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학교설립 등)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교사)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나. 한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다.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8. 재산의 수익조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②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끝)